

의안번호	2211883
의 퇴 인	주철현 의원
회 답 일	2025. 9. 25.
추계번호	25B4166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6억 3,000만원(연평균 3억 2,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130	—	—	—	—	130	26
실태조사 (안 제5조)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합계	430	300	300	300	300	1,630	326

주: 해양수산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추진 방식 및 용역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굴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굴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굴융복합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굴산업 전문기관 등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0조(굴산업전문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굴의 품질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우수한 굴과 굴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굴과 굴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굴과 굴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4조(굴 브랜드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굴 양식 방법과 생태적 특성에 기반한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한 지역 굴 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굴 관광 및 체험 인프라 조성 2. 지역별 굴 기반 기념품 및 지역 특산품 개발 3. 굴 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최 4. 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굴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12	안 제15조(굴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과 굴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굴과 굴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6조(수출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국제화와 굴류 및 굴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1. 굴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굴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굴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굴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굴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14	안 제18조(굴 자조금의 적립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굴과 굴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5	안 제19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2조(굴산업 집적화단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굴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굴산업 집적화단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7	안 제23조(굴산업 집적화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집적화단지에 사업장을 둔 굴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24조(굴산업 집적화단지에 대한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굴산업집적화단지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굴산업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9	안 제27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2	안 제5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	• 제3호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가공품의 제조 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의뢰,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조기술등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시책과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4	안 제7조(교육훈련)	×	• 제3호 - 제정안은 교육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교육훈련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을 알 수 없음
5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 제3호 -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을 알 수 없음
6	안 제9조(굴산업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제3호 - 현 시점에서는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범위와 운영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7	안 제10조(굴산업 전문기관)	×	• 제3호 - 제정안은 안 제1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안 제10조제2항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전문기관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의 합리적인 예측이 곤란함
8	안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	• 제3호 - 제정안은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알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9	안 제12조(굴의 품질 향상)	×	•제3호 - 제정안에 따른 굴의 품질향상, 판매확대, 굴 브랜드 육성, 소비촉진, 수출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육성(가공설비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우수수산물지원(융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대상에는 굴 업체가 포함됨 (단위: 백만원)						
10	안 제13조(판매확대)	×							
11	안 제14조(굴 브랜드 육성 등)	×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수산식품 산업육성 (가공설비지원) (보조)</td><td>이 사업은 수산식품산업 품질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설비(신규 또는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총사업비) 70억원 (국비 21억원(30%), 지방비 21억원(30%), 자부담 28억원(40%)) **업체당 국비 최대 지원한도 : 1.5억원 ***가공설비(전처리 기기 포함), 포장설비, 이물·금속검출기</td><td>2,10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수산식품 산업육성 (가공설비지원) (보조)	이 사업은 수산식품산업 품질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설비(신규 또는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총사업비) 70억원 (국비 21억원(30%), 지방비 21억원(30%), 자부담 28억원(40%)) **업체당 국비 최대 지원한도 : 1.5억원 ***가공설비(전처리 기기 포함), 포장설비, 이물·금속검출기	2,10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수산식품 산업육성 (가공설비지원) (보조)	이 사업은 수산식품산업 품질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설비(신규 또는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총사업비) 70억원 (국비 21억원(30%), 지방비 21억원(30%), 자부담 28억원(40%)) **업체당 국비 최대 지원한도 : 1.5억원 ***가공설비(전처리 기기 포함), 포장설비, 이물·금속검출기	2,100							
12	안 제15조(굴과 굴가공품의 소비촉진)	×							
13	안 제16조(수출 촉진 등)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이 사업은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54,563				
			우수수산물 지원 (융자)	수산물 수출업체에 우수수산물(원료)의 구매, 저장,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지원	148,946				
14	안 제18조(굴 자조금의 적립지원)	-	•미대상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수산물 자조금 지원사업</td><td>양식품목별 현안문제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수급조절,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금 지원 ※ 굴 자조금은 2025년 3억원</td><td>4,389</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수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양식품목별 현안문제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수급조절,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금 지원 ※ 굴 자조금은 2025년 3억원	4,389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수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양식품목별 현안문제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수급조절,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금 지원 ※ 굴 자조금은 2025년 3억원	4,389							
15	안 제19조(품질인증)	-	•미대상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수산물 식품 표준 규격 연구 용역	수산물식품 품질인증 대상품 목 및 표준규격 마련 ※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지원하 지 않고 기업 공모·평가 등을 통해 지원	100
16	안 제22조(굴산업집 적화단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3호 - 제정안에 따른 굴산업집적화단지의 지정, 굴산업집적화단지 실행계획 수립·시행, 굴산업집적화단지 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굴산업집적화단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17	안 제23조(굴산업집 적화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			
18	안 제24조(굴산업집 적화단지에 대한 평 가)	×			
19	안 제27조(권한·업 무의 위임·위탁)	×	•제3호 -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4조의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안 제5조의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첫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해양수산부의 유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3,000만원(연평균 2,600만원)으로 추계
 - (유사사례) '23~'27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연구(2022년, 130백만원)

[표 2]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130	-	-	-	-	130	26

주: 유사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연구용역 단가의 증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태조사(안 제5조)

- 해양수산부의 유사 실태조사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5억원(연평균 3억원)으로 추계
 - (유사사례) 수산부산물 통계 실태조사(2024년, 308백만원)

[표 3]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주: 유사 실태조사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태조사 단가의 증감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